근 거 법 규

도로교통법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- 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 학교 또는 특수학교
- 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- 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-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-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,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- 2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- 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
-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-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409

제출연월일: 2017. 11. 10. 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」에서 2017년 참전명예수당 시비보조금이 상향 지원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상향지급에 따른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법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조문 인용 및 문장정비 (안 제1조)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조문 인용 및 문장정비 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수당의 신청, 환수 규정 신설(안 제5조, 안 제8조)
- 라. 지원사업, 결정, 방법 등 지급절차 명확화 조문 정비(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
- 마. 기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자구 정비(안 제3조, 안 제9조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2조의2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・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: 2017. 10. 10. ~ 10. 30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54호

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"를 "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 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및 「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 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 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"국가보훈대상자"란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3. "명예수당"이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과 보훈명예수당을 말한다

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지원대상)"을 "(지원대상자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지원대상은"을 "지원대상자는"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"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, 보국수훈자"를 "국가보훈대 상자"로 한다.

-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참전유공자 등에게"를 "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 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"로, "지원사업을 실시"를 "사업을 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: 예산의 범위 내 제4조제2호 중 "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"을 "사망위로금 지급: 20만원"으로 한다.
- 제5조의 제목 "(지급대상자의 결정)"을 "(지급 신청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제3조에 해당되어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을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구비서류 중「전자정부법」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6조(지급결정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받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- 제7조의 제목 "(지급중지)"를 "(지급방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 분기 말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.
-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명예수당의 지급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.
 -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8조(지급중단 및 환수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 - 1.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
 - 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
 - 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한다.
- 제9조(종전의 제8조) 중 "정할 수 있다"를 "정한다"로 한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적용례)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지급하는 참전유 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햀

개 정 아

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 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」 제4조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 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 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 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> 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,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에 <u>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</u> 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 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사람을 말한다.

혀 행

- 2. "전몰군경 유족"이란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·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
- 개 정 안
- 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「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국 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3. "순직군경 유족"이란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제5호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4. "보국수훈자"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사람을 말한다.
- 5. "명예수당"이란 참전유공자에 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, 보국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말한다.

3. "명예수당"이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 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 수당을 말한다

<삭 제>

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만6	제3조(지원대상)
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<u>전몰</u>	국
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,	<u> 가보훈대상자</u>
<u>보국수훈자</u> 로서 명예수당 지급	
일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	
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	
으로 한다. 다만, 「국가유공자	
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	
률」 제79조에 따른 부적격자	
는 제외한다.	
제4조(지원사업) 울산광역시 중	제4조(지원사업)
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	
다)은 <u>참전유공자 등에게</u> 다음	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
각 호의 <u>지원사업을 실시</u> 할 수	<u>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</u>
있다.	<u>사업을 지원</u>
1. 참전유공자, 전몰군경 유족	1.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
및 순직군경 유족, 보국수훈	<u> 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: 예</u>
자에게 명예수당 월 6만원 지	<u>산의 범위 내</u>
<u>二</u> <u>当</u>	
2.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	2
에는 <u>사망위로금 20만원 지</u>	<u>사망위로금 지급: 20만원</u>
<u>급</u>	

혅 했 개 아 정 3. (현행과 같음) 3. (생략) 제5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구청장 제5조(지급 신청) ① 제3조에 해당 은 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되어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을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급대상자를 결정한다. 다. ②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 <신 설> 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 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 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 다만, 구비서류 중「전자정 부법」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 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

있다.

현 행

제6조(지급방법 및 시기)① 명예수당을 의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분기 말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.

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(이하 "사 망위로금"이라 한다)을 지급 받고 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3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 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. 다만, 구비서류 중「전자 정부법 .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 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 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13 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 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개 정 안

제6조(지급결정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받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 자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④ 명예수당 지급기간은 신청한	
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	
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	
지급한다.	
제7조(지급중지) 명예수당은 다음	제7조(지급방법) ① 구청장은 명예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수당을 매 분기 말 25일까지 지
자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.	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
<u>1. 사망한 자</u>	한다.
2. 다른 시・군・구로 주소지를	
<u>옮긴 자</u>	
3.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	
<u>된 자</u>	
<u><신 설></u>	② 명예수당의 지급은 결정된 날
	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
	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
	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
	및 순위에 대하여는 「국가유공
	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
	률」제1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
	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
	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
	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	T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조(지급중단 및 환수)① 구청장
	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
	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
	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	1.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「주
	민등록법」에 따라 타 지역으
	로 전출한 경우
	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
	을 받은 경우
	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
	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
	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
	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
	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.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	<u>제9조(</u> 시행규칙)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<u>정할 수</u>	<u>정한다</u> .
<u>있다</u> .	
	1